

## 2025년 4단계 BK21사업 우수대학원생 국제공동연수 추가공고 관련 FAQ

<BK21사업 팀, '25. 6. 16.>

### □ 공고 및 신청

**Q1. 2025년 우수대학원생 국제공동연수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**

A1. 교육부, 한국연구재단, BK21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NTIS, IRIS, HPP 등에서 '2025년도 글로벌 연수지원 사업 추진일정 공고'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*Q2. 국제 공동연수 기간을 1년 이내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?**

A2. 연수기간은 '6개월/12개월' 2가지 중 하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**Q3. 접수 시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**

A3. 네,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대학원생 여부는 무관하며, 4단계 BK21 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전일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생이면 가능합니다. 단, 전일제 여부는 학적부, 4대보험 등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(참여대학원생 자격 준용)

- ※ 단,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 수행 중인 교육연구단(팀)에 참여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석사, 박사, 통합과정 모두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참여하였으면 가능함(4단계 전 단계 참여 이력은 산입 불가)
- ※ 박사수료생의 경우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수료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

**Q4. 석·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**

A4. 대학 내부 규정 상 박사과정에 준하는 대학원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.

**Q5. 국제 공동연수지 및 연수기관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**

A5. 국제 공동연수지 및 연수기관에 대해 참여대학원생 및 지도교수와의 논의 후 연수지 및 연수기관을 컨택 및 선정하시고, 해당 선정완료 사항을 연수계획서에 포함시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연수기관 확정 관련 서류는 대학에서 보관증빙으로 구비해주시면 됩니다.

**Q6. 박사수료생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수료 이후 2년에 임신·출산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는데, 기준이 있을까요?**

A6. 임신·출산으로 인해 연구 활동이 중단된 기간은 대학 내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,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신·출산 1회당 최대 1년까지 인정됩니다. 또한,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**Q7. [서식1] 신청서의 어학능력 자격시험은 만료된 점수여도 가능한가요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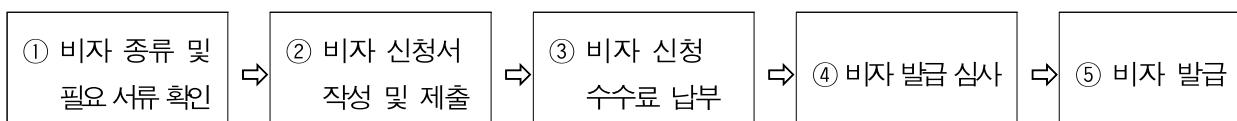
A7. 만료된 점수여도 기재 가능합니다.

**Q8. 연수와 관련하여 비자 발급은 개인이 진행하면 되나요?**

A8. 네, 비자 발급은 개인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 무비자 및 여행비자 등은 안전한 연수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불가하며, 학생비자, 유학비자 등 목적 및 체류 기간에 맞는 비자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Q9. 비자 발급 절차 가이드가 있나요?**

A9. 국가별로 상이하나, 보통 아래 절차로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국가별 행정절차 및 대학별 학기개시일 등이 상이\* 할 수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\* (예시) 호주, 일본, 영국 등 일부 국가는 비자 발급 시 대학 인증 절차 요구

※ 자세한 사항은 연수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확인 필요

## □ 대학자체 선발 평가 / 재단 선발 평가

**Q1. 평가패널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요?**

A1. 평가패널에 대한 구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되나, 분야별로 패널을 나눠서 운영을 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.

**Q2. 대학 자체 선발일 경우, 대학별 배분 인원 외 교육연구단(팀)별 지원 가능 인원이 정해져있나요?**

A2. 교육연구단(팀)별 지원 가능 인원에 제한은 없습니다.

**Q3. 대학 자체 선발의 경우, 배분 인원 외 후보인원 추천이 가능한가요?**

A3. 네, 대학 배분인원 외 선발 후보 인원은 5명까지 추가 추천 가능합니다.

**Q4. 선발인원 배분이 6개월 기준으로 배분되어 있는데, 연수기간은 6개월만 선발할 수 있나요?**

A4. 아닙니다. 각 대학은 총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되, 연수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 중 자유롭게 선발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1인당 지원액: (6개월) 최대 14백만원, (12개월) 최대 26백만원

**Q5. (별첨2) ‘국제 공동연수자 대학 선발 평가 가이드’는 대학 자체 평가 시, 필수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인가요?**

A5. 네, 맞습니다. 대학 자체 평가 시 제공드린 가이드 내 사항을 준수하시어 평가를 진행해주세요 합니다.

※ 가이드 위반 시, 해당 대학은 국제 공동연수자 선발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**Q6. 대학 자체 선발평가 이후 평가 결과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나요?**

A6. 평가 결과보고서, 평가결과 대장, 신청서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.

**Q7. 재단 선발 대상 대학의 추천 인원은 대학별 제한이 있나요?**

A7. 추천 인원은 대학별 2명 이상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 1명도 가능합니다.

## □ 사업 관리 및 사업비 지급

**Q1. 국제 공동연수 계획(연수기간,기관 등) 변경 시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변경 신청과 함께 재단으로 공문 발송도 필요한가요?**

A1. 국제 공동연수 계획 변경 시, 사업 종합정보시스템(<https://bk21four.nrf.re.kr/bkms>)을 통한 변경 승인 요청만 해주시면 됩니다.([별첨4] 참고)

**Q2. '26.2.28까지 출국이 어려울 경우, 출국일 연장이 가능한가요?**

A2.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'26.2.28.까지 출국하지 못할 경우, 출국일 연장(사업비 이월)이 불가하며,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.

**Q3. 연수 개시 후,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한 중도 귀국이 가능한가요?**

A3. 연수 개시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귀국할 경우,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. 또한 중도 귀국의 경우 재단으로 사전에 사업 중도포기 신청 공문을 보내 주셔야 합니다.

※ 단, 연수 개시 후 6개월 미만 내 연수 중단 시,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해당 학생은 재신청 제한 및 차년도 소속 대학의 선발인원 배분 등에 패널티 부여(6개월 신청자도 해당)

**Q4. 연수기간 중, 한국 일시 방문 또는 제3국을 방문할 경우, 방문 일자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**

A4. 연수기간 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하며, 15일 이내 범위에서 한국 일시 방문 또는 제3국 방문시, 대학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국외 공동연구 수행 중 일시 귀국을 할 수 있는 허용일수(귀국허용일수)는 전체 연수 기간 1년 중 출국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허용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불인정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 시 반납해야 함

**Q5. 국제 공동연수 선발 대상자에 대한 지원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?**

A5. 재단에서 대학(주관기관)으로 입금이 되며, 대학 내 관련 부서에서 연수생 개인 계좌로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. 또한, 송금확인 자료

또는 산학협력단 연수비 지급 캡쳐 화면 등 대학에서는 연수비 지원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.

**Q6. 항공권의 경우, 일정상의 사유로 학생 또는 대학(산학협력단)이 선결제 후 협약액이 입금되면 페이백 처리해도 되나요?**

A6. 선결제 이후 협약금액 입금 이후 페이백 또는 계정대체 진행 가능합니다.

**Q7. 참여대학원생 신분 유지 시 교육연구단(팀)의 사업비 지급과 관련하여 기준이 있을까요?**

A7. 연수기간 중 참여대학원생 신분 유지 시 연수비\* 성격이 아닌 비용은 교육 연구단(팀)의 사업비(국제화경비, 연구활동/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등)에서 지급이 가능하나, 연수비는 이중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\* 동일 연수 건으로 교육연구단(팀)의 사업비에서 여비, 체재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고, 학회 참석, 논문 게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 가능

**Q8. 타 정부 지원금과의 이중수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.**

A8. BK21사업과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, 국제 공동연수 성격의 사업이 아닌 타 정부 사업의 지원금을 수혜받는 경우는 가능합니다. 그러나, 국제 공동연수 성격의 타 정부 지원금, 교육연구단(팀) 사업비 및 대학 원혁신비에서 연수비, 항공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**Q9. 중도 귀국 시 사업비 월할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**

A9. 월할 계산 시, 월 15일 이상 연수를 수행하였을 경우 해당 월 연수비는 전액 지급되며, 15일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.

## □ 정산 및 결과보고

### Q1. 국제 공동연수비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
A1. 연수비 정산은 연수 종료 이후 BK21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, 대학에서 정산데이터 입력 및 보고서 탑재를 완료하시면 재단에서 검토 후 결과 및 반납 관련 안내가 진행됩니다.

※ 정산 시기에 연수가 종료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 개별 정산 진행 예정

### Q2. 국제 공동(해외)연수 정산시스템은 특정 정산 기간에만 오픈이 되나요?

A2. 아닙니다. 정산시스템은 상시 오픈할 예정입니다.

### Q3. 연수 중도포기자의 경우, 연수비를 기 반납하였을 때에도 정산 시스템에 집행내역을 입력해야 하나요?

A3. 네, 연수비를 기 반납한 경우에도 정산시스템에 해당 집행내역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. 단, 비고란에 “연수 중도포기로 연수비 기 반납(반납일 YY.MM.DD.)” 명시 부탁드립니다.

### Q4. 정산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는 수정이 가능한가요?

A4. 작성 후, ‘제출하기’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수정 및 재저장이 가능합니다.

### Q5. 정산시스템 입력은 기관관리자만 가능한가요?

A5. 네, 대학 기관관리자가 총괄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
### Q6. 결과보고 관련 서류(착수,중간,결과보고서)는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?

A6. 착수, 중간, 결과보고서는 해당 서류 제출 기한 내 연수자가 대학으로 제출을 해주시고, 대학에서는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